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1. 11. 18.(금)

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원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의결 가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1-17차 전원회의(2011.3.21)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 의결 나 ~ 의결 라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1-63(서)-294)

- 제51차 위원회('11. 9. 19) 보고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기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정부시책, 민생정보 등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에 대한 자막고지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정보
 - 수도·전기·가스중단, 성금모금,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정보
 - ② 방송사업자의 자막고지 관련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
 -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행사'
 - ③ 향후 일정
 - '11.11월 : 고시 제정안 발령 및 관보 게재 의뢰

나. OBS경인TV(주)의 '밀러라이트' 및 'Captain Morgan' 방송광고 재심에 관한 건 - (2011-63(서)-295~296)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밀러라이트' 및 'Captain Morgan' 방송광고 제재조치 처분('11. 8. 30)에 대한 OBS경인TV(주)의 재심 청구('11. 9. 23) 건에 대하여, 원심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각각 '경고'를 명하기로 의결함

※ 원심 결정 내용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제2항제13호 및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제1항제1호 등을 위반한 OBS경인TV '밀러라이트' 및 'Captain Morgan' 광고에 대해 '경고' 제재조치 처분

다. (주)MBC경남의 '새로운 지역MBC 탄생' 재심에 관한 건 - (2011-63(서)-29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새로운 지역MBC 탄생'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 ('11. 9. 15)에 대한 (주)MBC경남의 재심 청구('11. 10. 21) 건에 대하여, 원심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기로 의결함

※ 원심 결정 내용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 및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주)MBC경남 ‘새로운 지역MBC 탄생’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63(서)-298)

○ 제47차 위원회('11. 8. 18) 보고 후, 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

⑦ 기간통신사업 진입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제4항 신설)

- (개정사유)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와 주파수 할당제도의 심사시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무선사업 진입절차의 흐름 보완 필요

- (개정내용)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제도 개선(안 제19조제3항, 안 제19조제4항 및 제89조 제1호 신설, 안 제96조제5호)

- (개정사유) 현행 ‘공공의 이익’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 필요

- (개정내용)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

㉢ 경미한 양수·합병 인가심사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 (개정사유) 소규모 양수·합병 등은 인가심사 간소화 필요

- (개정내용)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양수·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자원 이용 효율화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안 제63조제2항, 안 제63조제3항 신설, 안 제63조 제4항, 안 제63조제5항 신설)

- (개정사유)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 (개정내용) 현재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

㉡ 설비제공 현장조사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제5항 신설)

- (개정사유) 설비제공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행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에 규정된 권한을 상향입법 필요
- (개정내용) 방통위의 설비제공·이용실태 현장조사 권한을 법정화

㉢ 번작번호 차단의무 등 부과(안 제84조제5항·제6항 및 제104조제2항제4호 신설)

- (개정사유) 전자금융사기, 스팸문자 등 전화번호 번작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개정내용) 사업자에게 번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

※ 규개위 개선권고 : 조치의무 위반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수용)

㉙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14호 신설, 안 제48조제1항)

- (개정사유)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관리 필요
- (개정내용)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번호자원 관리계획을 번호체계·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 규개위 철회권고 : 전기통신번호 변경·회수의 명시적 근거규정 삭제(수용)

③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개선

㉠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인가 규제 완화(안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 (개정사유) 사업자 불편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협정 관련 규제 완화 필요
- (개정내용)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부속협정의 인가는 신고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 도입(안 제32조제2항·제5항, 안 제92조제1항제1호, 안 제104조제5항제4호)

- (개정사유)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 촉진 필요
- (개정내용)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공표하는 제도 도입

㉢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상향(안 제104조제1항 신설)

- (개정사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여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개정내용)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②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상한 제한(안 제53조제8항 신설)

- (개정사유)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

- (개정내용)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인 60개월로 제한

④ 기타 현행법의 미비사항 정비 등

⑦ 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 확대(안 제22조제1항·제4항, 안 제24조 단서 신설)

-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자본금 1억원 미만 등)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

㉡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92조제4항 신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 거부사유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 등록거부 사유를 등록요건 미비, 구비서류 험결, 법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외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㉙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별칙 완화(안 제97조제3호)

- 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

⑤ 향후 일정

- 법제처 심사 : '11년 11월

- 국회 제출 : '11년 12월